

#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(안) 심 사 보 고 서

2000. 5. 27.  
행정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0년 5월 12일 영등포구청장 제출
- 나. 회 부 일 자 : 2000년 5월 12일 회부
- 다. 상 정 일 자 : 제71회(임시회) 제1차 위원회(2000년 5월 23일 상정의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재무국장 홍성배)

- 가. 개정이유
  - 지방세법의 개정 에 따라 위원회를 재정비하고,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·보완코자 함.
- 나. 주요골자
  - 1) 납세완납증명서와 미과세증명서를 납세증명서로 함(안 제6조의 2)
  - 2) 위원회를 재정비하기 위해 구세조례 제14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삭제하고 제14조의 2로 신설코자 함(안 제14조의 2)
  - 3) 지방세법시행령 제5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의 개정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신설코자 함(안 제14조 및 제14조의 3)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김대완)

동 개정조례안은 '99년 12월 28일자 지방세법 제38조의 개정으로 조례 제6조의 2중 납세완납증명서와 미과세증명서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“납세증명서”로 일원화하고, 동법 시행령 제5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의 개정으로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“지방세심의위원회”를 신설하고, 기존의 “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”는 세부적으로 정비·보완하였으며, 조례 제14조의 3에 “과세표준심의위원회”를 신설하여 지방세의 과세표준을 심의토록 한 사항으로써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정비한 사항으로 원안의 결이 적절하다고 사료됨.

## 4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##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121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0. 5. 12.  
제출자 : 영등포구청장

### 1. 개정이유

- 지방세법의 개정 에 따라 위원회를 재정비하고,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·보완코자 함.

### 2. 주요골자

- 1) 납세완납증명서와 미과세증명서를 납세증명서로 함(안 제6조의 2)
- 2) 위원회를 재정비하기 위해 구세조례 제14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삭제하고 제14조의 2로 신설코자 함(안 제14조의 2)
- 3) 지방세법시행령 제5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의 개정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신설코자 함(안 제14조 및 제14조의 3)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련근거 : - 지방세법 제3조 및 제38조  
- 지방세법 시행령 제19조, 제5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 
- 세정13400-369(2000. 4. 1)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다. 합의사항 : 합의되었음

따로붙임 :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 2 제목 “(납세완납증명서 발급사무의 위임)”을 “(납세증명서의 발급사무 위임)”으로 하고, 동조 본문중 “지방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납세완납증명서와 미과세증명서”를 “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증명서”로 한다.

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4조(지방세심의위원회) ①영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세심의위원회(이하 “지방세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지방세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58조 및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하며,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4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의 2(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) ①시행규칙 제3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구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(이하 “적부심사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 위원은 지방세 관련 5급 이상의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.

1.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의 전직 공무원
2. 판사·검사·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
3. 공인회계사·세무사·감정평가사·법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
4. 공인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법률학 기타 세무 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
5. 기타 규칙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

③적부심사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④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⑤시행규칙 제36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.

⑥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4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의 3(과세표준심의위원회) ①지방세에 관한 과세표준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과세표준심의위원회(이하 “과세표준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58조 및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하며,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  
=====

현	행	개	정 (안)
<p>제6조의2(납세완납증명서 발급사무의 위임) 구청장은 지방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납세완납증명서과 미과세증명서의 발급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. 다만,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발급할 수 있다.</p>	<p>제6조의2(납세완납증명서 발급사무의 위임) .....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한 납세증명서 ..... ..... .....</p>	<p>제14조(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) ①구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(이하 “적부심사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②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보궐로 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 다만, 당연직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③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④적부심사위원회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14조(지방세심의위원회) ①영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세심의위원회(이하 “지방세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②지방세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58조 및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하며,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
<p>〈신 설〉</p>	<p>제14조의2(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) ①시행규칙 제3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구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(이하 “적부심사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②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 위원은 지방세 관련 5급 이상의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.</p>		

#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=====

현	행	개 정 (안)
	<p>1.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의 전직공무원</p> <p>2. 판사·검사·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</p> <p>3. 공인회계사·세무사·감정평가사·법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</p> <p>4. 공인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법률학 기타 세무 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</p> <p>5. 기타 규칙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</p> <p>③적부심사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</p> <p>④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⑤시행규칙 제36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.</p> <p>⑥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>제14조의 3(과세표준심의위원회) ①지방세에 관한 과세표준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과세표준심의위원회(이하 “과세표준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②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58조 및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하며,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

<신 설>